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6호서식]

#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서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조합 | 명칭 | | 대표자 |
| | 주사무소 소재지 | | |
| | 설립신고일 | | 해산 사유 발생일 |
| | 해산 사유 | | |
| 재산 현황 | 우리사주(주) | 조합계정 | |
| | | 조합원계정 | |
| | 조합기금(원) | 조합원 출자금 | |
| | | 조합원 외의 출연금 | |
| | 채무액(원) | | |

잔여재산 처분방법

「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인(청산인)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○○지청)장 귀하

| | | |
|---|---|---|
| 첨부서류 | 1. 조합의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<br>2. 조합의 재산목록 1부<br>3. 조합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1부 | 수수료<br>없 음 |

## 작성방법

조합의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, 해산등기, 파산선고, 법원 판결문 등의 서류를 첨부합니다.

## 처리절차

| 보고서 작성 | 접 수 | 확인·검토 | 결 재 | 대장 정리 및 전산 입력 |
|---|---|---|---|---|
| 보고인 | 근로개선지도과, 고객지원실 | 근로개선지도과 | 청장·지청장 | 근로개선지도과 |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